

○ 2024년 환경/에너지 관련 법규 적용내용

순번	법규명	주요 업무	세부내용	적용대상
1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환경 경영시스템 의무인증		- 적용대상 : 전 사업장 ※ 관련부서 : 사업장 영업지원팀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적용대상 : 본사 사무실, 4개 사업장 ※ 관련부서 : 사업장 영업지원팀 (타입월드 제외)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제품·구조 또는 회수제품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1. 26.> <주목>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유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 (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 <주목>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충진력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적용대상 : 1) PB상품(HMR, 농수산, 강진맥주 등) 2) 직매입 상품(배선, 식품 등) ※ 관련부서 : 1) 상품본부 F&B부문 전 팀 2) 상품본부 브랜드사업부문 전 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의 제질·구조 평가	제9조의3(포장재의 제질·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제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제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제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제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결면에 표시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1) PB상품(HMR, 농수산, 강진맥주 등) 2) 직매입 상품(배선, 식품 등) ※ 관련부서 : 1) 상품본부 F&B부문 전 팀 2) 상품본부 브랜드사업부문 전 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부담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유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유기 의 제조업자(주무관의 상포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유기의 경우에는 그 주무관을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1. 26.>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유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유기	- 적용대상 : 1) 직매입 상품(배선) ※ 관련부서 : 상품본부 브랜드사업부문 전 팀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대포장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포장제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유효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주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포장재의 제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 8. 6., 2013. 1. 22., 2019. 12. 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제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마. 의약품류 바. 의류류: 아이스팩용 냉매포장	- 적용대상 : 1) 사업장 내 해당상품 (ex.멸절트상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포장 규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주목> 2. 합성수지제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제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제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제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적용대상 : 1) 식품매장(마켓 등) 내 포장 제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사용규제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table><tr><th>시설 및 업종</th><th>대상 1회용품</th><th>준수사항</th></tr><tr><td>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td><td>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숟가락(종이숟가락, 합성수지숟가락 및 금속박숟가락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나무시계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찜질찜질보 사. 1회용 빨대 및 것은 빨대(합성수지 제품)</td><td>사용억제</td></tr><tr><td>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td><td>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td><td>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다만, 제각집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td></tr><tr><td>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td><td>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td><td>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td></tr><tr><td>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제조·가공업</td><td>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td><td>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td></tr></table>	시설 및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숟가락(종이숟가락, 합성수지숟가락 및 금속박숟가락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나무시계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찜질찜질보 사. 1회용 빨대 및 것은 빨대(합성수지 제품)	사용억제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다만, 제각집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제조·가공업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	- 적용대상 : 1) 사업장 내 해당상품
시설 및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	가.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숟가락(종이숟가락, 합성수지숟가락 및 금속박숟가락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나무시계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찜질찜질보 사. 1회용 빨대 및 것은 빨대(합성수지 제품)	사용억제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다만, 제각집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제조·가공업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나. 1회용 분투 및 소벌책 다함,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분투 및 소벌책 2) 생선, 조류, 육류 등 음식료품의 곁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분투 나. 1회용 빨대 및 것은	제각, 폐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1) 사업장 내 해당상품 2) PB상품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보증금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공표>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표>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적용대상 : 1)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유계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매장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11. 4.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3. 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한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만 한다.	- 적용대상 : 1) 사업장 내 해당상품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성 표시 광고 준수 (친환경 표시_녹색제품)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 (환경성 보장제도)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이하 "회수의무"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18. 6. 12.> 1.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리 주어야 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적용대상 :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제품 총 49종 ※ 관련부서 : 상품본부 폐선부문 라이프스타일팀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측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2021. 12. 7.> <증정> 13. 「유류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정포 <증정> 19.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증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table><tr><td>구분(기준)</td><td>미세먼지 PM10(㎍/㎥)</td><td>미세먼지 PM2.5(㎍/㎥)</td><td>이산화탄소 CO2(ppm)</td><td>폼알데하이드 HCHO(㎍/㎥)</td><td>일산화탄소 CO(ppm)</td></tr><tr><td>대규모정포</td><td>100이하</td><td>50이하</td><td>1,000이하</td><td>100이하</td><td>90이하</td></tr><tr><td>실내주차장</td><td>200이하</td><td>-</td><td>1,000이하</td><td>100이하</td><td>250이하</td></tr></table>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table><tr><td>구분(기준)</td><td>이산화질소 (ppm)</td><td>리돈 (Bq/㎥)</td><td>중금속유기화합물 (㎍/㎥)</td><td rowspan="3">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다.</td></tr><tr><td>대규모정포</td><td>0.1이하</td><td>148이하</td><td>500이하</td></tr><tr><td>실내주차장</td><td>0.30이하</td><td>148이하</td><td>1,000이하</td></tr></table>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18. 4. 17., 2019. 4. 2.>	구분(기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CO2(ppm)	폼알데하이드 HCHO(㎍/㎥)	일산화탄소 CO(ppm)	대규모정포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9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0이하	100이하	250이하	구분(기준)	이산화질소 (ppm)	리돈 (Bq/㎥)	중금속유기화합물 (㎍/㎥)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다.	대규모정포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48이하	1,000이하	- 적용대상 : 전 사업장 ※ 관련부서 : 사업장 영업지원팀
구분(기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CO2(ppm)	폼알데하이드 HCHO(㎍/㎥)	일산화탄소 CO(ppm)																														
대규모정포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9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0이하	100이하	250이하																														
구분(기준)	이산화질소 (ppm)	리돈 (Bq/㎥)	중금속유기화합물 (㎍/㎥)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다.																															
대규모정포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48이하	1,000이하																																
8	대기환경보전법	공기조화기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사업장 영업지원팀																															
		운행차량 관리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9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측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증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	- 사업장 영업지원팀																															

10	수도법	저수조 위생관리	제53조(위생장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사업장 영업지원팀
11	하수도법	정확조 관리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정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사업장 영업지원팀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수도 설치 및 관리	제4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 사업장 영업지원팀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전단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티오이 이상인 자 1. 전년도에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에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제32조(에너지전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전단전문기관(이하 "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9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전단의 효과가 적은 하파드·발전소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 사업장 영업지원팀
14	폐기물관리법	폐기를 위탁처리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재량값, 위치정보, 열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 사업장 영업지원팀
15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사업장 영업지원팀

16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2. 6. 10.> <중략>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중략>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8., 2022. 6. 10.>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28.> <중략>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9. 29., 2017. 11. 28., 2019. 1. 15.>	- 세부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석면 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조사 및 조치, 법정측정 이행, 석면철거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	------------	---	---